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박준태 · 박수영
김재섭 · 유영하 · 김소희
한지아 · 조정훈 · 김기현
김용태 · 이인선 · 장동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,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또한,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,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

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5호 및 제 230조제6항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호 중 “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자도”를 “자를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나.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다.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제230조제6항 중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, “500만원 이상 3천만원”을 “2천만원 이상 7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19條(被選舉權이 없는 者) 選舉 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. 1. ~ 4. (생략) 5.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<u>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(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)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第19條(被選舉權이 없는 者) 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 ---<u>자</u>----- 가. <u>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 나. <u>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 다. <u>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
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	제230조(매수 및 이해유도죄) ①

~ ⑤ (생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500만원 이상 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⑥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-- <u>2천만원 이상 7천만원</u> ----- -----.
⑦ · ⑧ (생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